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Violence*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및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강사 & 전임연구원 김 예 정
교수 & 겸임연구원 김 득 성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Kim, Yea-Jung

Professor : Kim, Deuk-S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violence.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was on the effect of an experience of childhood violence and the witnessing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future spouse and child violence.

Two hundred and forty-two married couples and 50 married couples with indicted husbands and their wives were surveyed.

The results showed that

Husbands who had experienced childhood violence from their father and witnessed their father's violence towards their mother tended to inflict more physical violence on their wives than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such events.

Wives who witnessed violence between both parents' tended to receive more physical violence from their husbands than those who did not witness such events. In addition, wives who did not experience childhood violence but at the same time witnessed interparental violence tended to receive more physical violence from their husbands than those who did not witness such events.

Husbands who experienced childhood violence from their mother and both parents and husbands who witnessed their father's violence toward their mother tended to be more violent towards their children than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such events. Wives who experienced childhood violence from their mother and father and wives who witnessed violence between both parents tended to be more violent towards their children than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such events.

Corresponding Author: Yea-Jung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Kumjung-k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2762 E-mail: efood1@hanmail.net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ese results partially support that the transmission of family violence across generations and show the differential effects of gender and the violent parent's gender on family violence.

주제어(Key Words): 부부폭력(spouse violence), 자녀폭력(child violence), 부모간 폭력목격(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아동기 폭력경험(experiencing childhood violence), 폭력의 세대간 전달(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violence)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혼부부가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은 원가족에서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일 것이다. 이 두 변인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상당한 경험적 지지가 있었다. 그 결과 원가족에서 학습된 폭력이 세대에 걸쳐 전수된다는 “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학계에서는 이미 “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부폭력에 대해 설명하는 하나의 미니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Widom, 1989). 즉 폭력이 세대에 걸쳐 전달된다는 의미는 아동기 때 원가족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도 부부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자신의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만(Heyman & Smith Slep, 2002), 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의 이러한 측면을 포괄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가족에서 폭력경험이 있는 남성이 아내폭력의 가해자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을 가정폭력이나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한 변인으로만 다루었다. 따라서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을 변인으로 채택한 연구가 양적으로 적지는 않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폭력의 세대간 전달의 구체적인 양상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의 세대간 전달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그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다. 주로 섬티의 구타당한 여성이나 통제집단과 비교되지 않은 학대부모(Walker, 1979; Kaufman & Ziger, 1993; Kashani, Shekim, Burk, & Beck, 1987) 등 임상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나 일화적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원가족에서 폭력을 경험한 남성이 성장 후 부부폭력에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여성의 경우 폭력의 세대간 전달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폭력남편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 아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남편의 폭력 보고에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둘째, 가정폭력의 실태조사에서 지금까지의 국내의 선행 연구는 원가족에서 폭력을 경험한 남성이 부부폭력에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에 초점두었다. 그것은 남성이 부부폭력의 가해자인 비율이 높았던 점과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사회화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가족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부부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국외의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성별에 따라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부부폭력에서 다른 역할(가해자 혹은 피해자)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여성의 폭력은 기본적으로 남성의 폭력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처럼 원가족에서 폭력의 가해자 역할을 학습한다는 생각은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Saunders, 1986). 그러나 부부간 폭력의 가해율과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DeMaris, 1993; Kalmuss, 1984; O'Leary, Malone, & Tyree, 1994) 남성은 부부폭력의 가해자 역할을, 여성은 피해자 역할을 학습할 것이라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남녀 모두 부부폭력의 가해자 역할 혹은 피해자 역할을 학습하는지 검토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자녀에 대한 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정폭력이 세대간 폭력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을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으로 분리하여 세대간 폭력에 미치는 개별적 효과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두 변인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독립변인 중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란 단일변인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은 원가족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서 성장한 후 가정폭력의 학습에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Kalmuss, 1984). 즉 아동기 폭력경험은 자녀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성인이 되어 자녀에게 폭력을 행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에, 부모간 폭력목격은 부부역할에 대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폭력에 더 영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원가

족에서 경험한 폭력의 두가지 형태가 성인기 폭력의 양상에 다른 영향을 주기보다는 단지 폭력의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인기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두 변인이 세대간 폭력에 미치는 개별적 효과와 함께 그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원가족에서 폭력경험이 세대간 폭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Bandura와 동료들(Ross & Ross, 1962)에 따르면 노출된 폭력모델의 성별이 모방할 폭력의 양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는지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는지가 성인기 가정폭력의 양상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을 학습하는데 동성부모의 모델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는 것이다. 즉 일반부부와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입건된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라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이 부부폭력에서 다른 역할(가해자 혹은 피해자)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자녀폭력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이 부부폭력과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가정폭력이 세대에 걸쳐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입노력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부부폭력의 가해 정도는 어떠한가?
2.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부부폭력의 피해 정도는 어떠한가?
3.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결혼 후 자신의 자녀에 대한 폭력 정도는 어떠한가?

2. 용어 정의

1) 부부폭력

부부가 배우자에게 행한 신체적 폭력의 가해와 배우자로부터 당한 신체적 폭력의 피해를 의미한다.

2) 자녀폭력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행한 신체적 폭력의 가해를 의미한다.

3) 아동기 폭력경험

원가족에서 성장하면서 아동(본 연구의 대상)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양쪽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을 의미한다.

4) 부모간 폭력목격

원가족에서 성장하면서 아동(본 연구의 대상)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본 경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본 경험, 그리고 부모가 서로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본 경험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학습이론

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부폭력의 주요한 전조자인 폭력적인 원가족에서 자란 경험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 Bandura, Ross, & Ross, 1962)은 아동기 때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했거나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것의 영향이 세대에 걸쳐 부부폭력으로 전달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제공되어 왔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아동은 서로 사랑한다고 가정되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맞거나 가족구성원들 간에 때리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분노를 표현하거나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간 신체적 폭력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의사소통하게 된다고 한다.

원가족에서 심한 신체적 체벌을 받은 사람은 폭력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므로, 원가족에서 심한 신체적 체벌의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결혼 후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Simons, Lin, & Gordon, 1998). 이처럼 부모가 아동에게 가한 심한 신체적 체벌이 훈육차원에서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수정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신체적 체벌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교육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그만두거나 수정하게 된다(Simons, Lin, & Gordon, 1998). 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폭력이 효과적인 행동수정전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 잘못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 폭력은 정당화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이후 학습된 폭력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지

는 사회적 상황에서 강화되는데, 특히 역할모델이 자신과 동일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모델의 행동을 더 잘 모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링 효과는 여아에게선 뚜렷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억제요인에 의해 폭력을 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가족에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폭력적인 부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Curtis, 1963), 부모간 폭력목격이 성장한 후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동성 부모의 역할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 즉 아동이 동성부모의 행동을 모방한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남자는 결혼 후 아내에게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고 여아의 경우는 결혼 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 반대되는 학습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동성부모의 역할이 부부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서의 모델링에 대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했는지에, 부모간 폭력목격은 아동이 결혼 후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수용가능한 것임을 학습하게 하여 부부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Kalmuss, 198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원가족에서 가족구성원간 폭력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경우에 따라 가족내 폭력행동이 수용적일 수 있음을 학습하며, 부부폭력은 일차적으로 원가족에서 역할모델이 되는 부모로부터 학습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이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이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는 세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이 부부폭력의 가해에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피해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Cappell & Heiner, 1990; Carter, Stacey, & Shupe, 1988)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가해자로서든지 아니면 피해자로서든지 간에 폭력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Straus와 Yodanis(1996)은 10대 때 신체적 체벌을 받은 성인은 우울, 결혼갈등과 함께 결혼생활에서 폭력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부부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

구는 충분치 않다(Kalmuss, 1984).

둘째,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이 배우자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별로 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Gelles(1976)는 원가족에서 신체적 폭력경험이 남성의 경우는 부부폭력의 가해 가능성을, 여성의 경우는 부부폭력의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Ulbrich와 Huber(1981)는 부모간 폭력목격이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때리는 것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있으나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때리는 것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Sigelman, Berry와 Wiles(1984)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이 있는 남성과 여성 중 여성만이 부부폭력의 피해에 관련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Kalmuss(1984)는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과 여성은 둘다 부부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부부폭력에서 남성은 가해자가, 여성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연구자들은 남성폭력이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폭력가해자로서 남성에만 초점을 두었다(김경신, 김정란, 2002; Simons, Johnson, Beaman, & Conger, 1993; Simons, Lin, & Gordon, 1998; Sugarman, Aldarondo, & Boney-McCoy, 1996; Woffordt, Mihalic, & Menard, 1994). 그러나 이는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다음세대에서 여성의 부부폭력 가해와 남성의 부부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여성의 부부폭력 가해가 남성의 부부폭력 가해에 비해 상해의 결과가 덜 위험할지라도, 여성도 남성만큼이나 그들의 배우자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DeMaris, 1993; Kalmuss, 1984; Morse, 1995; Straus, 1993; Straus & Gelles, 1986)에 주목한다면 여성의 부부폭력 가해, 남성의 부부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폭력의 세대간 전달 효과를 적극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셋째,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 중 어느 변인이 세대간 폭력전달에 더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결과는 연구자들이 초점을 두고 조사한 변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르다. Kalmuss(1984)는 두 변인 중 부모간 폭력목격이 부부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더 강력한 예측자임을 주장한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Alexander, Moore, Alexander, 1991; DeMaris, 1987;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Straus & Yodanis, 1996)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심한 신체적 체벌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와 피해를 상승시키는 특성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넷째,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은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음 세대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Pagelow(1981)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것이 남성의 부부폭력 가해와는 관련이 있었으나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Kalmuss(198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것이 남성이 부부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켰고, 여성이 부부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증가시켰다.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음 세대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는 선행연구 결과의 불일치와 연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 파악하기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한 세대를 넘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가족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결혼 후 자신의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0대에 부모로부터 가장 빈번히 맞았던 응답자들이 10대에 맞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보다 결혼 후 자신의 아동을 향해 심한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그들의 자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았다(Cappell & Heiner, 1990). 그러나 Kalmuss(1984)는 어느 사회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은 수용가능한 훈육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간 폭력에 대한 모델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서 자녀폭력의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고, Watson(1985, 김정옥, 류도희, 1997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이 많았던 부모집단이 적었던 집단에 비해 아동을 더 자주 학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치영과 박성연(1992)의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했거나 부모간 공격적 대화나 폭력을 관찰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교사로부터 공격적인 아동으로 평가받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는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 중 어느 변인이 자녀폭력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힘들며, 폭력부모의 성별효과도 검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부부 242쌍과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부부 50쌍을 합한 총 292쌍의 기혼부부이다. 일반가정에서 대

〈표 1〉 일반가정 부부들의 일반적 특성 명(%)

변 인	구 분	남 편	아 내
연 령	30대 이하	81(34)	95(40)
	40대	83(35)	95(40)
	50대 이상	75(31)	47(20)
	계	239(100)	237(100)
교육수준	초등졸	4(2)	14(6)
	중등졸	21(9)	40(17)
	고등졸	97(40)	110(46)
	대 졸	107(45)	72(30)
	대학원 이상	11(5)	4(2)
계	240(100)	240(100)	
직 업	무직, 주부	17(7)	182(76)
	고용직, 기능직, 노무직	10(4)	7(3)
	판매/서비스직	12(5)	13(5)
	숙련/반숙련직, 생산직	45(19)	5(2)
	소규모자영업	36(15)	14(6)
	일반사무직, 공무원	71(30)	2(1)
	일반전문기술직	38(16)	15(6)
	고위전문직	9(4)	3(1)
	계	238(100)	241(100)
변 인	구 분		
수 입	50만원 미만	1(0.4)	
	50-100만원	19(8)	
	101-150만원	51(21)	
	151-200만원	50(21)	
	201-250만원	39(16)	
	251-300만원	29(12)	
	301-400만원	38(16)	
	401만원 이상	13(5)	
계	240(100)		
결혼기간	10년 이하	74(31)	
	11-20년 이하	51(21)	
	21-30년 이하	101(42)	
	31년 이상	13(5)	
	계	239(100)	
자녀수	0명	18(7)	
	1명	29(12)	
	2명	130(54)	
	3명 이상	65(27)	
	계	242(100)	

상자를 구하기 위해 부산시 6개구(동래구, 연제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에 거주하는 기혼부부를 유의표집하였고, 총 300쌍이 조사되었으나 부실기재를 제외한 242쌍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부부는 전국의 주요 7개 도시(서울, 대전, 수원, 인천, 광주, 대구, 부산)의 검찰청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해당 부부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부부폭력의 사례수를 보다 잘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총 310쌍의 설문지가 입건부부에게 배포되었으나 76쌍

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부실하게 기재되었거나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외한 50쌍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남편은 30~50대에 걸쳐 있는 반면에 아내는 30대~40대가 주로 표집되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남편은 대졸, 고졸 순이었고, 아내는 고졸, 대졸 순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일반사무직·공무원이 30%로 가장 많았고, 숙련/반숙련직·생산직이 19% 순이었으며, 아내는 무직이 대부분(76%)이었다. 총가정수입은 101~150만원, 151~200만원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21~30년 이하가 42%로 가장 많았고 자녀는 2명이

54%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부부의 경우, 남편은 30~50대에 골고루 걸쳐 표집되었고, 아내는 30대~40대가 대부분 표집되었다. 교육수준은 남편은 고졸, 중졸 순이었고 아내는 고졸, 초등졸 순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소규모 자영업이 20%로 가장 많았고, 고용직·기능직·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숙련/반숙련직·생산직이 16%로 그 뒤를 이었다. 아내는 무직이 62%로 가장 많았다. 총가정수입은 50~100만원이 30%, 101~150만원이 28%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10년 이하가 가장 많았고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았다.

이상에서 일반부부와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부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부부가 입건부부에 비해 연령이 다소 높은 부부가 표집되었고, 교육수준, 직업지위, 총가정수입이 높은 편이며, 결혼기간도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부부들의 일반적 특성 명(%)

변 인	구 분	남 편	아 내
연 령	30대 이하	17(34)	24(48)
	40대	23(46)	22(44)
	50대 이상	10(20)	4(8)
	계	50(100)	50(100)
교육수준	초등졸	10(20)	14(28)
	중등졸	11(22)	8(16)
	고등졸	18(36)	20(40)
	대 졸	10(20)	6(12)
	대학원 이상	1(2)	1(2)
계	50(100)	49(100)	
직 업	무직, 주부	7(14)	31(62)
	고용직, 기능직, 노무직	8(16)	6(12)
	판매/서비스직	8(16)	3(6.0)
	숙련/반숙련직, 생산직	8(16)	0(0)
	소규모자영업	10(20)	6(12)
	일반사무직, 공무원	5(10)	2(4)
	일반전문기술직	3(6)	2(4)
	고위전문직	0(0)	0(0)
계	49(100)	50(100)	
변 인	구 분		
수 입	50만원 미만	8(16)	
	50~100만원	15(30)	
	101~150만원	14(28)	
	151~200만원	6(12)	
	201~250만원	2(4)	
	251~300만원	3(6)	
	301~400만원	0(0)	
	401만원 이상	2(4)	
계	50(100)		
결혼기간	10년 이하	25(52)	
	11~20년 이하	13(27)	
	21~30년 이하	7(15)	
	31년 이상	3(6)	
	계	48(100)	
자녀수	0명	4(8)	
	1명	14(28)	
	2명	21(42)	
	3명 이상	11(22)	
	계	50(100)	

2. 측정도구

1) 부부폭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폭력 척도는 Straus 등(1996)의 Conflict Tactics Scale II를 김예정, 김득성(1999)이 번안한 척도와 Margolin, John 및 Foo(1998)의 Domestic Conflict Index를 참고로 하여 신체적 폭력의 문항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행한 폭력(가해)과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당한 폭력(피해)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음(1점), 1년에 1~2번(2점), 1년에 3~4번(3점), 한 달에 1번(4점), 한 달에 2~3번(5점), 일주일에 1번(6점), 일주일에 2~3번(7점), 거의 매일(8점)의 8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에 폭력이 많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남편 가해의 경우 $\alpha=.94$, 아내 가해의 경우 $\alpha=.80$, 남편 피해의 경우 $\alpha=.89$, 아내 피해의 경우 $\alpha=.92$ 이었다.

2) 자녀폭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폭력 척도는 Straus 등(1996)의 Conflict Tactics Scale II를 김예정, 김득성(1999)이 번안한 척도의 하위척도 중 신체적 폭력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상해의 위험이 있는 폭력행동(물건을 던졌다, 때밀거나 밀치거나 움켜잡았다, 손으로 뺨을 때렸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년동안 자녀에게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전혀 없었다(1점), 거의 없었다(2점), 가끔 있었다(3점), 자주 있었다(4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폭력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alpha=.89$, 어머니의 경우 $\alpha=.85$ 이었다.

3) 아동기 폭력경험 척도

아동기 폭력경험 척도는 MacEwen과 Barling(1988)의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김예정, 김득성(1999)이 번안하여 수정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1점), 가끔 있었다(2점), 자주 있었다(3점)의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분석에서는 폭력경험이 없는 사람과 폭력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4) 부모간 폭력목적 척도

부모간 폭력목적 척도는 MacEwen과 Barling(1988)의 원가족에서의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김예정, 김득성(1999)이 번안한 4문항의 척도 중 부모의 성별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절치 않은 1문항(부모님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을 제외한 3문항이 사용되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거나 심하게 두들겨 패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의 2문항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의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보지 못했다(1점), 가끔 보았다(2점), 자주 보았다(3점)의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분석에서는 목격경험이 없는 사람과 목격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적, 부부폭력 및 자녀폭력의 발생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부부폭력 척도와 자녀폭력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적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부부폭력과 자녀폭력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아동기 폭력경험은 아동기 폭력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아버지로부터 폭력경험이 있는 사람, 어머니로부터 폭력경험이 있는 사람, 부모 양쪽으로부터 폭력경험이 있는 사람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부모간 폭력목적은 부모간 폭력목적이 전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 부모 양쪽이 서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LSD(the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Method)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적의 경향

남편의 16%, 아내의 12%가 아동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

〈표 3〉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적 발생율 명(%)

아동기 폭력 경험			부모간 폭력 목적		
집 단	남 편	아 내	집 단	남 편	아 내
없 음	143(51)	150(52)	없 음	210(73)	214(74)
母로부터	30(11)	60(21)	父 → 母	71(25)	62(22)
父로부터	46(16)	33(12)	母 → 父	0(0)	2(1)
부모로부터	60(22)	44(15)	서로간	6(2)	6(3)

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남편의 11%, 아내의 21%가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남편의 22%, 아내의 15%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편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아내는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50%에 달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로부터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들이 성장기 자녀를 훈육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체적 폭력을 자주 이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원가족에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비율을 보면 남편의 25%, 아내의 22%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아내의 2%만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편의 2%와 아내의 3%가 부모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편과 아내 둘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비율에 비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과 부모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비율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아직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는 비율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신성자(2001)는 지난 1년동안 아동의 약 80.4%가 부모로부터 어떤 형태든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아동의 약 13.2%가 부모간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원가족에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폭력형태 중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에 비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남편과 아내의 25% 이상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부간 언쟁과 폭력상황이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주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2. 부부폭력의 경향

폭력 가해의 경우 지난 1년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비율은 42%,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한 비율은

〈표 4〉 부부간 폭력 발생을 명(%)

	남편 가해	아내 가해	남편 피해	아내 피해
폭력 발생	121(42)	70(24)	66(23)	109(37)
폭력 없음	171(58)	222(76)	226(77)	183(63)

24%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발생율이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발생율에 비해 거의 2배가 더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보편적임을 나타낸다.

폭력 피해의 경우 지난 1년동안 남편이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한 비율이 23%이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비율은 37%로 나타나 아내가 남편보다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더 많이 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와 피해 응답율이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남편의 42%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였다고 보고한 반면에 아내의 37%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남편과 아내간 폭력에 대한 회고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발생하였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낮게 보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때, 남편보다 아내가 폭력의 피해사실을 과소보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부부간 폭력발생 보고의 불일치는 앞으로 부부간 폭력 발생율을 파악할 때 남편과 아내 양쪽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아내의 폭력가해율과 남편의 폭력피해율로 볼 때, 부부폭력이 발생할 때 남편이 일반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만은 아니며, 부부가 서로 폭력을 주고받는다든 것을 알 수 있으나, 아내의 폭력 가해가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행해졌는지는 본 연구에서 추론하기 어렵다.

3. 자녀폭력의 경향

응답자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폭력을 얼마나 행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남편의 39%, 아내의 51%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주된 훈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50%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였다는 사실은 아동에게 폭력에 대한 학습모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으

〈표 5〉 자녀폭력의 발생을 명(%)

	자녀 폭력	
	폭력 발생	폭력 없음
남편(n=270)	106(39)	164(61)
아내(n=269)	138(51)	131(49)

로써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나 학교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녀폭력 문항은 아동에게 상해를 줄 수도 있는 심한 신체적 폭력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폭력을 당한 아동은 신체적 위험에 놓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사용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자녀훈육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4.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부부폭력의 가해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 부부폭력의 가해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의 경우 부부폭력 가해정도는 아동기 폭력 경험(F=5.62, p<.001)과 부모간 폭력목격(F=8.8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과 어머니로부터 폭력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아내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적이 없는 집단보다 아내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편의 부부폭력 가해는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남편이 아내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한다는 점에서 남편의 경우 동성부모를 모델링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폭력이 더 용인되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아내의 경우, 부부폭력 가해정도는 아동기 폭력경험

〈표 6〉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남편의 부부폭력 가해

아동기 폭력 경험					부모간 폭력 목격				
집 단	N	M (SD)	사후검증	F	집 단	N	M(SD)	사후검증	F
없 음	140	1.07(0.16)	a	5.62*	없 음	202	1.11(0.27)	a	8.87*
모로부터	30	1.16(0.36)	ac		父→母	66	1.42(0.84)	b	
아버지로부터	45	1.38(0.99)	b		母→父	0	.	.	
부모로부터	58	1.25(0.41)	bc		서로간	5	1.10(0.19)	a	

*p<.001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부부폭력의 피해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 부부폭력의 피해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내의 경우 부부폭력 피해정도는 아동기 폭력 경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F=4.75, p<.001)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서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적이 없는 집단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보다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폭력을 당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의 경우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2명) 집단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내의 부부폭력 피해에는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의 상호작용(F=6.52, p<.0001) 효과가 발견되었는데, 아동기 폭력경험은 없으면서 부모가 서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폭력을 당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내의 부부폭력 피해에는 부모간 폭력 목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아내보다 부모가 서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폭력을 당한 점이다. 아내의 경우는 폭력을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동성의 어머니 행동을 모델링하기 보다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폭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폭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성장한 후 자신의 결혼에서 남편과도 서로 폭력을 주고받는 등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즉 남편의 폭력에 대한 아내의 방어적 폭력 사용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더 많이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남편의 부부폭력 피해정도는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자녀폭력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 결혼 후 자신의 자녀에 대한 폭력가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의 경우 자녀폭력 정도는 자신의 아동기 폭력경험(F=10.89, p<.001)과 부모간 폭력목격(F=3.85,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과 아버지로 부터 폭력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적이 없는 집단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다.

아내의 경우 자녀폭력 정도도 자신의 아동기 폭력경험(F=7.47, p<.001)과 부모간 폭력목격(F=5.46, p<.01)에 따

〈표 7〉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아내의 부부폭력 피해

아동기 폭력 경험(A)				부모간 폭력 목격(B)				F
집 단	N	M (SD)	사후검증	집 단	N	M(SD)	사후검증	
없 음	150	1.25(0.71)	a	없 음	210	1.24(0.56)	a	4.75*
모로부터	59	1.17(0.45)	a	父→母	62	1.15(0.28)	ab	
父로부터	32	1.23(0.40)	a	母→父	2	1.33(0.47)	bc	
부모로부터	43	1.33(0.73)	a	서로간	10	1.90(2.08)	c	

A B = 6.52**

*p<.001, **p<.0001

〈표 8〉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남편의 자녀폭력

아동기 폭력 경험					부모간 폭력 목격				
집 단	N	M (SD)	사후검증	F	집 단	N	M(SD)	사후검증	F
없 음	138	1.11(0.30)	a	10.89**	없 음	200	1.19(0.43)	a	3.85*
모로부터	30	1.40(0.67)	bc		父→母	66	1.37(0.57)	b	
父로부터	44	1.20(0.49)	ac		母→父	0	.	.	
부모로부터	56	1.48(0.41)	b		서로간	4	1.25(0.40)	a	

*p<.05, p<.001

〈표 9〉 아동기 폭력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아내의 자녀폭력

아동기 폭력 경험					부모간 폭력 목격				
집 단	N	M (SD)	사후검증	F	집 단	N	M(SD)	사후검증	F
없 음	147	1.19(0.42)	a	7.47**	없 음	203	1.26(0.45)	a	5.46*
모로부터	56	1.41(0.50)	b		父 → 母	62	1.47(0.46)	b	
아버로부터	31	1.48(0.49)	b		母 → 父	2	2.00(0.47)	b	
부모로부터	42	1.49(0.53)	b		서로간	4	1.44(0.88)	ab	

*p<.01, p<.001

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기에 어머니/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이 있는 집단이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적이 없는 집단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녀폭력은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부부와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부부폭력의 가해와 피해정도, 그리고 자녀폭력의 정도가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그리고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폭력의 세대간 전달 양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부부폭력 가해정도는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이 아내에게 폭력을 더 많이 행하였다. 한편 아내의 부부폭력 가해정도는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아내의 부부폭력 피해정도는 아동기 폭력경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서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이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폭력을 당하였다. 또한 아동기 폭력경험은 없으면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집단이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폭력을 당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한편 남편의 부부폭력 피해정도는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자녀폭력 정도는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자녀폭력 정도는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이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다. 아내의 경우 자녀폭력 정도는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이 있는 집단이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자녀에게 폭력을 더 많이 행하였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집단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해 몇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폭력은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남편과 아내별로 그리고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기 폭력경험이 있고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더 많이 행하였고, 부모가 서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가족에서의 폭력이 세대에 걸쳐 전수되긴 하지만, 그 양상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남성은 부부폭력에서 가해자 역할을, 여성은 피해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 폭력행동이 원가족에서의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고 보는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동시에, 폭력의 세대간 전달의 과정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한다는 주장(Kalmuss, 1984; Langhinrichsen-Rohling, Neidig, & Thorn, 1995; Mihalic & Elliott, 1997)을 지지하는 것이다. 원가족에서 동일한 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부부폭력에서 가해자가 되고 아내는 부부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성장하면서 남성은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격려되는 반면에 여성은 수동적으로 행동하도록 격려되는 성역할사회화에 일부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편의 부부폭력 피해와 아내의 부부폭력 가해가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이 아내의 부부폭력 가해와 관련이 없었던 점은 여성의 폭력은 기본적으로 남편 폭력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처럼 원가족에서 폭력가해자 역할을 학습한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 Saunders(1986)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가해가 방어적 성격이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아내의 부부폭력 가해와 남편의 부부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내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른 부부폭력은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폭력경험이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남편이 아내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한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경우 동성의 부모행동을 모델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아내의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아내보다 부모가 서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복종과 방어에 가치를 두는 성유형화된 사회화의 영향 때문에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지는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지는 않고 당하기만 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아내의 부부폭력에도 동성 부모의 모델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수가 적어서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자녀폭력은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남편과 아내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아동기 폭력경험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남편과 아내가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하였다. 아내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사례수(2명)가 너무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쉽게 용납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남편에게 폭력을 행하지 못한 여성도 아동은 폭력의 보다 안전한 타겟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폭력을 더 많이 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아동에 대한 폭력은 '자녀훈육'이란 명목하에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게 이끌 수 있다.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자녀 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자녀가 다시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인성발달에 부

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폭력의 세대간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원가족에서 폭력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가 폭력에 취약함을 주지시키고 세대간 폭력이 전수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자녀훈육방법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편의 부부폭력 가해에는 원가족에서 폭력적인 동성부모의 행동을 모델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아내의 부부폭력 피해와 남편과 아내의 자녀폭력에는 폭력부모의 성별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학습연구에서 관찰자의 성 뿐만 아니라 모델의 성이 모방된 폭력 양상에 영향을 준다는 Bandura와 동료들(Ross & Ross, 1962)의 주장은 남성의 경우에만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에서의 폭력이 세대에 걸쳐 전수되므로 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은 지지되었으며 그 양상은 남녀에 따라 그리고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즉 남편은 폭력의 가해자 역할을, 아내는 폭력의 피해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남편이 부부폭력을 가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남성의 경우 동성부모의 모델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원가족에서의 폭력은 결혼 후 자신의 자녀에 대한 폭력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세대간 폭력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폭력은 성별 그리고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자녀에 대한 폭력은 훈육차원에서 더 많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을 폭력부모의 성별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점과 종속변인을 부부폭력의 가해 뿐만 아니라 피해와 자녀폭력으로 세분해서 폭력의 세대간 전달과정을 다각도로 밝혀보고자 한 점이다. 또한 일반가정의 부부와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인 입건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기한 점이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의 세대간 전달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남녀별로 그리고 폭력부모의 성별 효과를 고려한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그 영향이 연구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이 부분적으로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구성원간 신체적 폭력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서 부부폭력 및 자녀폭력 수준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가족에서 폭력경험이 있는 부부는 이미 빈약한 갈등관리방법을 습득하고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대간 폭력의 전달을 막기 위해서는 원가족에서 폭력경험이 있는 고위험집단의 부부를 진단하여 그들에게 분노조절방법 및 갈등해결기법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자녀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시키는 것을 포함한 효과적인 자녀훈육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가해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분석과 함께 폭력의 세대간 전달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해 진행되었지만 결과 중에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이론과 함께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이론에 기초하여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경신, 김정란(2002). 아내학대에 대한 세대전이 과정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 85-98.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 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예정,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1)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정옥, 류도희(1997).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05-219.
- 노치영, 박성연(1992).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4), 219-230.
- 신성자(2001). 부부의 자녀폭력 및 부부폭력과 자녀양육수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39-174.
- Alexander, P. C., Moore, S., & Alexander, E. R., III. (1991). What is transmitted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57-668.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Ross, R., & Ross, S. (1962). Transmission of aggression through imitation of aggressive models. *J.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575-582.
- Cappell, C., & Heiner, R. B. (199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aggression. *J. of Family Violence*, 5, 135-152.
- Carter, I., Stacey, W. A., & Shupe, A. W. (1988).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ssessment of the generation transfer hypothesis. *Deviant Behavior*, 9, 259-273.
- Curtis (1963). Violence breeds violence perhaps?. *American J. of Psychiatry*, 120, 386-387.
- DeMaris, A. (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 of Family Issues*, 8, 291-305.
- DeMaris, A. (1993). When disagreements lead to violence in marriag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56-760.
- Gelles, R. (1976). *Family Violence*. Beverly Hills, CA: Sage.
- Heyman, R. E., & Smith Slep, A. M. (2002). Do child abuse and interparental violence lead to adulthood family violence? *J. of Marriage and Family*, 64, 864-870.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11-19.
- Kashani, J. H., Shekim, W. O., Burk, J. P., & Beck, N. C. (1987). Abuse as a predictor of psychopatholog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43-50.
- Kaufman, J., & Zigler, E. (199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is overstated.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pp. 209-221). Newbury Park, CA: Sage.
- Langhrichsen-Rohling, J., Neidig, P., & Thorn, G. (1995). Violent marriage: Gender differences in levels of current violence and past abuse. *J. of Family Violence*, 10, 159-176.
- Margolin, G., John, R. S., & Foo, L. (1998). Interactive and unique risk factors for husband'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of their wives. *J. of Family Violence*, 13(4), 315-344.
- Mihalic, S. W., & Elliott, D.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model of marital violence. *J. of Family Violence*, 12, 21-47.

- Morse, B. J. (1995). Beyond the Conflict Tactics Scale: Assessing gender difference in partner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10*, 251-272.
- O'Leary, K. D., Malone, J., & Tyree, A. (1994).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Pre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effec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3), 594-602.
- Pagelow, M. D. (1981). *Woman battering: Victims and their experience*. Beverly Hills, CA: Sage.
- Saunders, D. G. (1986). When battered women use violence: Husband abuse or self-defense. *Violence and Victims, 1*, 47-60.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K.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530-548.
- Simons, R. L., Johnson, C., Beaman, J., & Conger, R. D. (1993). Explaining women's double jeopardy: Factors that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harsh treatment as a child and violence by a husban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713-723.
- Simons, R. L., Lin, K. H., & Gordon, L. C. (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le dating violence: A prospective stud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467-478.
- Straus, M. A. (1993). Physical assaults by wives: A major social problem.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67-87. Newbury Park, CA: Sage.
- Straus, M. A., & Gelles, R. J. (1986).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65-479.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Doubleday/Anchor.
- Straus, M. A., & Yodanis, C. L. (1996). Corporal punishment in adolescence and physical assaults on spouses in later life: What accounts for the link?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825-841.
- Sugarman, D. B., Aldarondo, E., & Boney-McCoy, S. (1996). Risk marker analysis of husband-to-wife violence: A continuum of aggression. *J.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313-337.
- Ulbrich, P., & Huber, J. (1981). Observing parental violence: Distribution and effect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623-631.
-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
- Widom, C. S. (1989). Does violence beget violenc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6*, 3-28.
- Woffordt, S., Mihalic, D. E., & Menard, S. (1994). Continuities in marital violence. *J. of Family Violence, 9*, 195-225.

(2006년 4월 30일 접수, 2006년 6월 2일 채택)